

# 2019년도 제2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1. 20.(수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 심의위원 : 박성호(분과위원장 대행)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안건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회의안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5건(안건번호 제2019-151383호~제2019-151442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심의 안건 복제물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상저작물로 창작자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여 공중이 이를 감상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정으로 볼 때 모두 저작권법 보호대상의 저작물일 뿐만 아니라 상영중이거나 상영전 후 2주이내의 저작물이라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임. 저작권법 제 133조의3에 따르면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단속행위에서 최우선하여야 할 대상은 국내외 개봉전이나 영화관과 동시에 전송되고 있는 경우라 할 것임 이는 그 피해가 보다 크고 빠른속도로 유통이 확산될 경우 극장 수입의 심각한 침해, 제3자 채권침해의 법리로도 볼 수 있으므로 출판법 할인을 고시와 같이 영화시장을 지키기 위해 영화의 개봉전후 2주내에는 보다 저작권법 침해 처벌에 있어 강력한 방법으로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향후 촉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짐
  
- B 위원 : 본 심의안건 75건의 게시물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C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2019년 공개된 국내 및 외국 영화를 데드카피하여 전송한 사안들로서, 그 중에는 예컨대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2019), 영화 광대들: 풍문 조작단(2019), 영화 조커(2019), 영화 라이온 킹(2019),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2019)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제2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20.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